

일본 식민지 시대의 수의사와 수의업무

이시영 박사
전 한국마사회 경주마보존원장

편집자주 “한국수의학 발달사”는 지난 한국의 수의학 태동부터 현재까지의 발전과정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본지 지난 2000년 3월호(제36권 제3호)부터 2002년 6월호(제38권 제6호)까지 총 12회의 원고가 게재된바 있으며, 이번호부터 이어서 연재를 재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일본에서의 수의사법

19세기 말 일본은 명치유신(明治維新)을 하면서 서구의 수의학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수의사에 대한 규정인 수의개업시험규칙과 수의사면허규칙(獸醫師免許規則)이라는 것이 1880년(명치 18년) 8월 22일 태정관(太政館) 포고 17호와 제28호로서 제정되었는데 수의개업시험규칙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수의사면허규칙은 이보다 4개월 후인 18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를 볼 때 수의개업시험규칙은 수의사면허와는 달리 단지 개업을 위한 면허였으며, 정식으로 수의사의 명칭은 수의사면허규칙에 의한 면허자를 칭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는 서구의 수의학을 최초로 도입하면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그 후 1885년에 들어서 장제사(裝蹄師)에 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1880년에 제정한 수의사면허규칙과 수의개업시험규칙을 통합한 수의면허시험규칙이라는 것이 농림성령 제 11호로 발표된다. 이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은 종전의 것은 필기시험만 치렀는데 내과학과 외과학의 실기시험이 병행 실시되면서 과거의 전통적인 수의학에서 탈피하여 서구의 현대수의학에 접근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일본의 현대수의학이 후에 한국내정에 간여하면서 한국의 수의학부문에 직간접으로 반영되었을 것이다. 이로 미루어 한국의 전통적인 수의학은 1900년대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상 문을 닫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당시 사회가 극도로 혼란하여 수의학과 같은 존재는 사회적으로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당시 일본의 개업시험규칙의 시험과목을 살펴보면 家畜解剖學 家畜生理學 家畜藥物學 家畜內科學 家畜外科學 등의 학술과 실기시험을 실시하였는데 한국의 전통적인 馬醫方이나 牛醫方の 과목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1885년에 제정한 수의면허시험규칙은 약 30여년 간 일본의 수의사에 관한 법률로서 효력을 발생하다가 1926년 4월 6일에 법률 제 53호로 일본제국 국회를 통과한 수의사법(獸醫師法)이라는 것이

탄생되었다. 전문 14개조와 부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법이 대한민국에서 수의사법이 제정 공포되기 이전인 1956년까지 우리의 법률이기도 하였다.

일본에서는 1885년 농상무성령 제18호로서 수의학과 학칙에 대해서 규정하였는데 그중 교과과목은 표1과 같다. 또한 수의학과의 수업연한은 만 3년 이상 수업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2. 식민지 조선의 수의사법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이므로 일본의 수의사법이나 이 법 이전의 수의사면허규칙에 의해서 면허를 받은 일본의 수의사들이 한반도에서 활동하게 된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조선주둔군 사령부 수의단(團)이나 제19사단과 20사단의 수의단의 수의들은 일본육군수의학교나 군대에서 정한 수의교육을 받은 자들이 근무하였다.

이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3개 그룹의 수의사가 활동하였다. 정식으로 일본의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사면허를 받은 사람들과, 군대에서 수의교육을 이수하고 일등수의 혹은 이등수의라는 계급(후에는 수의장교로서 소위 중위 등의 계급)으로 근무한 자들과, 제삼의 수의사로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마의(馬醫) 혹은 소침장이(牛醫) 들이다. 이들은 전통적인 수의기술을 구전으로 혹은 일부 식자는 책으로 배웠기에 일본의 현대적인 수의들과 충돌이 불가피하였다.

일본은 한국에서도 면허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이 생겼다 이미 1931년에 이리농림학교에서 수의축산학과가 신설되었으며 1938년에는 수원고등농림학교에 정식으로 수의축산학과가 신설되었기에 이들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에게 정식으로 면허를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했다. 그래서 1937년 조선총독부령 제132호로 조선수의사규칙(朝鮮獸醫師規則)이라는 것을 제정 공포하게 된다.

표 1. 수의학과의 교과과목

동물학 및 이화학	산과학
해부학 및 그 실습	동물역론 및 경찰법
병리학 토론	병체해부학 미 그 실습
생리학	가축사양법
약물학	번식법 및 위생론
내과학	제철학 및 그 실습
외과학	치료법 실습

이는 총 36개조에 달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수의사에 관한 규정이라 할 수 있는데 모범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수의사법에 근거하였으며, 1956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든 수의사법이 제정 공포되기까지 한반도에서 유일한 수의사에 관한 법률이기도 하다.

이 규칙은 수의사 면허와 아울러 수의업 면허라는 두 가지 면허에 대해서 규정했는데 수의업 면허는 자격이 다소 부족한 사람들에게 보다 쉬운 시험의 과정을 통과시켜 한시적으로 주는 제도였다.

또한 이 규칙에는 과거 전통수의사들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가축의생규칙(家畜醫生規則)이라는

것도 제정토록 하였는데 이는 각도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으로서 각도장관이 가축의생규칙이라는 것을 제정 공포하게 된다. 이 두 가지 법률이 식민지인 한반도에 최초로 만들어지는 수의사에 관한 법령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후 이 규칙에 의한 수의사면허시험이 실시되기도 한다.

가. 조선수의사규칙의 내용

조선총독부령 제 132호로서 조선수의사규칙이 1937년 9월 1일자로 발표된다.

제1조 수의사가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선총독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수의사법 제1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관립 또는 공립의 실업학교 또는 조선총독이 인정하는 실업학교에서 수의학학을 수학하고 졸업한 자.
3. 외국의 수의학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외국에서 수의사의 면허를 받은 제국신민으로서 수의업을 위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그 나라의 수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수의업을 위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농림대신이 교부한 수의사면허증 또는 수의면장을 가진 자는 본령에 의한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로 간주한다.

제2조 조선총독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수의사면허를 주지 않는다.

1. 6년의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에 처했던 자.
2. 6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한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3.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준금치산자.
4. 정신병자, 농자, 아자, 맹자.

제3조 조선총독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의사의 면허를 주지 않을 수 있다.

1. 6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에 처했던 자
2. 수의사(獸醫事)에 관해 벌금에 처했거나 부정을 저지른 자

제4조 수의사가 아니면 가축의 진찰이나 치료를 할 수 없다.

전항의 가축의 종류는 소 말(노새와 당나귀 포함) 면양 산양 돼지 개 및 고양이이다.

제5조 수의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본적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과 제1조 제1항의 해당사항을 기재한 면허신청서에 호적등본 혹은 초본과 졸업증명서, 시험합격증서, 외국에서의 수의사면허증의 사본을 조선총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수의사의 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6원, 수의사면허증의 변경이나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는 1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는 면허 변경 또는 재교부하고자 하는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 조선총독은 수의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수의사면허증을 교부한다.

제8조 수의사가 본적지 또는 성명의 변경이 있거나 수의사면허증 또는 수의면장의 망실 또는 훼손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본적 또는 성명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망실된 수의사 면허증 또는 수의면장을 발견했을 때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조선총독으로부터 수의사면허증을 재교부 받았을 때에는 발견된 수의사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수의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진료소에서 수의업을 개시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진료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그의 진료소를 휴업하거나 폐지하거나 이전할 할 때도 동일하게 해야 하며, 단 진료소를 다른 도로 이전하고자 할 때는 이전 전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는 수의사면허증 혹은 수의면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국가나 공공단체 및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조합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에 가축의 질병의 진찰 치료의 사무에 종사하는 수의사에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수의사는 자기가 진찰했거나 치료를 했을 때는 진단서나 처방전을 교부해야 하며, 또한

검안했을 때는 검안서를 또는 사산(死産)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단 진료중의 가축이 폐사했을 때 교부하는 폐사진단서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개업을 하는 수의사는 진찰이나 치료의 요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수의사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자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서나 검안서 또는 사산증서의 교부를 거절할 수 없다.

제12조 수의사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업무상 학위나 칭호 및 전문 과명을 제외한 그의 기능 요법 또는 경력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수의사는 진료부를 작성해야 하며 진찰 치료를 한 환축의 종류 성별 연령 명칭, 그리고 병명 및 치료법과 소유자 및 보관자의 주소와 성명 진찰 치료한 일자 등을 기재한 진료부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수의사는 그가 진찰 치료한 환축의 소유자 또는 보관자에게 주는 처방전에는 환축의 종류 성별 연령 명칭 등을 명확히 기록해야 하며, 또한 소유자나 보관자의 성명 주소등과 약품의 종류와 용법 용량 처방연월일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의사는 환축 치료를 위해 약제를 환축의 소유주 혹은 보관자에게 교부할 때에는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지에 그의 용법 환축의 종류 소유자 또는 보관자의 성명, 진료소의 명칭과 자기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 수의사가 제2조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선총독은 제1조 제1항의 수의사에게 교부한 면허를 취소하거나 동조 제2항의 수의사에게 교부한 수의업을 금지한다.

수의사가 제3조 각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는 조선총독은 수의업을 정지 또는 상황에 따라 전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7조 전조의 처분을 받은 자는 조선총독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의사면허증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면허의 취소를 받은 경우에 반납해야 하며, 수의업의 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수의사면허증의 이면에 수의업 정지의 요지를 기재하고 정지 기간 만료 후에 이를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제18조 조선총독은 제16조 제1항의 면허의 취소 또는 수의업 금지의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그의 처분의 원인이 끝났거나 개선의 정이 뚜렷한 자에게는 재 면허를 교부하든가 수의업금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 농림대신으로부터 수의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의 정지기간 중 수의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20조 수의사가 폐업을 했을 때는 30일 이내에 조선총독에게 신고하고 조선총독으로부터 받은 수의사면허증을 반납 받는다.

수의사가 사망하거나 실종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그의 호주나 가족이 전항의 수속을 취해야 한다.

제21조 제17조 1항 또는 전조의 경우에 있어서 수의사면허증을 반납 또는 제출할 때는 사유를 신

고하여야 한다.

제22조 본령에 의한 조선총독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경찰서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23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백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4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수의업 금지 또는 정지 중에 수의사의 업무를 수행한 자
3. 제10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24조 제11조 또는 제 1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1백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5조 제8조 제1항 또는 제4항, 제9조 제1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항, 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과료에 처한다.

부칙

제26조 본령 시행기일은 별도로 정한다.

제27조 제1조 제2항의 규정한 수의사로서 본령의 시행 시 수의업에 종사한 자는 본령 시행 후 30일 이내에 그의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그의 진료소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수의사면허증 또는 수의면장 사본을 첨부하여 그의 주소 및 진료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조선총독은 당분간 제1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의 이력 및 기량을 심사하여 업무의 지역과 기한을 정해서 수의업의 면허를 줄 수 있다.

제29조 전조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본적 주

소 성명 생년월일과 수의업을 위한 지역과 기간을 기재한 신청서를 호적등본이나 초본 및 이력서와 그의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선총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수의업의 면허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6월, 수의업 면허증의 변경 또는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1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 조선총독은 수의업의 면허를 주고자 할 때는 수의업 면허증을 교부한다.

제32조 수의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축의 질병에 관한 진찰 치료를 위한 업무를 할 수 있다.

제33조 제8조 내지 제18조 및 제20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수의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도 준용한다.

제34조 수의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다른 법령의 적용에 관해서도 수의사 또는 수의로 간주한다.

제35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제외하고 본령을 시행할 때 가축의 질병에 관한 진찰 치료의 업무를 한 자는 본령 시행 후 3월 이내에 한하여 본령에 의한 면허의 신청 또는 1937년 조선총독부령 제133호(가축의생에 관한 건)에 의거한 면허 또는 승인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6조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과료에 처한다.

이 규칙의 제1조를 살펴보면 일본의 수의사법을 모범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선총독의 면허를 받은 자로 한다' 라고 했으며 1항에서는 '수의사법 제1조 1항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라고 명기하고 있다.

일본 수의사법 제1조 수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농림대신의 면허를 받아 수의사 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수의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을 가져야 한다.

1. 대학령에 의한 대학에서 수의학학을 이수하고 학사로 칭함을 받은 자, 동경제국대학 농학부 수의학과를 졸업하였거나 관립이나 공립의 전문학교 또는 문부대신이 인정하는 동등이상으로 지정된 학교에서 수의학학을 이수하고 졸업한자이거나 수의사시험에 합격한 자.

조선수의사규칙에 의거하여 1938년부터 면허를 신청 심사하여 면허를 수여하였는데 제1호는 38년 1월 12일에 면허를 받은 김병섭(金炳涉: 평안북도) 씨였으며 그 후 계속하여 많은 사람들이 수의사 면허를 받게 된다. 식민지기간에 조선총독부로부터 수의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총287명인데 이중에

표2. 본적지 별 면허수여자

본적지	면허인수	본적지	면허인수
함경북도	3	충청북도	6
함경남도	21	충청남도	15
평안북도	74	전라북도	24
평안남도	6	전라남도	15
황해도	3	경상북도	30
강원도	7	경상남도	9
경기도	4	일본	70

는 일본인도 70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1942년 9월 25일자로 면허번호 287호를 수여하고 이후에는 면허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이는 정규실업학교에서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정식 면허시험에 합격한자들이 배출됨으로써 중단한 것 같다.

나. 수의사면허시험규정

조선총독부는 일본의 수의사법과 별개로 수의사 면허시험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의사규칙을 개정한다. 1941년에 들어서 조선에서도 수의사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제1조의 3항을 신설하여 조선총독이 정한 수의사시험에 합격한자라고 추가하였다.

그리고 동일자로 조선수의사시험규칙이라는 것이 반포된다. 이때까지 일본에서 수의사면허시험을 보고 합격하거나, 한반도에서 조선총독이 인정한 수의학과를 졸업한 사람에게 면허증을 주었는데 이제부터는 면허시험을 보아 합격하여야만 면허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만큼 어려운 관문이 만들어진 것이다.

전문 10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조에서 조선수의사 면허시험은 매년 시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는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으로 6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 산자 또는 수의사법을 위반한자 등에 대해서 면허시험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자 야자 맹자들도 자격이 없다.

제3조는 시험과목이다. 시험과목은 실기시험과 학술시험으로 구분하는데 학술시험 과목으로서는 가축병리학(가금병리학 포함), 가축세균학 및 면역학, 가축약물학, 가축내과학(가축전염병학 포함), 가축외과학, 가축산과학, 수의경찰학(가축위생학 포함), 축산학(축산제조학 포함), 가축사양학, 장제학(제병학 포함)이다.

표3. 연도별 면허자

연 도	면허인 수
1938	117명
1939	58
1940	30
1941	40
1942	42

수의사면허시험은 학술시험에 합격한 자라야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실기시험으로서 내과임상, 외과임상, 외과수술, 장제의 4개 과목이다.

장제사법의 규정에 의한 장제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 주는 장제사에 관한 학술시험 및 실기시험을 따로 치러야 한다. 즉 장제사는 조선총독의 권한사항이 아니기에 장제사법에 의한 면허시험에 합격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다. 조선 수의사시험위원 규정

또한 동일자로 조선수의사시험위원회 규정이라는 것을 공포하게 된다. 이 규정은 총 7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조에서는 위원장과 위원 약간 명 그리고 주사 1명으로 조직한다 라고 했으며, 제2조에서는 위원장과 위원 그리고 주사는 조선총독부와 관서의 직원 중에서 위촉한다라고 했다.

제3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로서 위원과 주사를 감독하며, 제4조에서는 위원장은 시험 종료 후 그 결과를 조선총독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5조는 위원의 직무로서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시험을 집행하며, 제6조는 주사의 직무로서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시험의 사무를 관장한다 라고 했다.

제7조는 시험사무를 관장하기위하여 서기를 둘 수 있으며 이는 조선총독부 및 산하기관의 판임관 중에서 임명하며, 또한 서기는 상사의 지휘를 받아 사무에 종사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3. 수의사 면허시험 실시

그해 7월 2일에는 역사적으로 조선에서의 제1회 수의사면허시험을 실시한다는 조선총독부고시(제 993호)가 총독부 관보 4321호(1941년 7월 2일)에 발표된다.

“조선수의사시험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41년 11월 10일부터 경성부 전농정(현 전농동) 경성공립농업학교에서 다음의 과목으로 수의사면허시험을 실시한다. 시험을 응시코자 하는 자는 동년 9월 30일까지 조선수의사시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원서(동령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첨부할 것)와 첨부서류

및 사진을 조선총독부 警務局 衛生課에 우편으로 제출할 것.

1941년 7월 2일 조선총독 南次郎

표 4. 제1회 면허시험 도별 응시자와 합격자

도 별	시험참가 수	합격자 수
경기도	18	5
충청북도	3	1
충청남도	2	0
전라북도	8	0
전라남도	7	0
경상북도	0	0
경상남도	1	1
황해도	1	1
평안남도	7	1
평안북도	11	5
강원도	4	0
함경남도	4	1
함경북도	2	0
일본	1	0
계	69	15

표 5. 학술시험 과목별 합격자 수

시험 과목	응시자 수	합격자 수
가축 해부학	68	27
가축 생리학	68	34
가축 병리학	65	28
가축 세균학	69	15
가축 약물학	64	39
가축 내과학	69	22
가축 외과학	65	42
가축 산과학	64	48
수의 경찰학	65	45
축산학	65	55
가축 사양학	63	36
장제학	63	50

표 6. 수의사 면허 시험 문제

가축해부학	1. 말 소 및 돼지의 대장의 육안적 구조를 설명하라 2. 말의 간장을 도해하라 3. 다음의 용어를 간단히 설명하라 가. 脾門 나. 歐氏管 다. 輸尿管 라. 副睪丸
가축생리학	1. 내분비물은 어떤 것이며, 내분비물을 영위하는 기관의 명칭은 2. 혈액은 어떤 역할을 하며, 혈구의 종류는 3. 다음의 것을 아는 대로 간단히 기술하라 가. 맥박 나. 소화 다. 혈당 라. 근육의 강직성 수축 마. 반사작용
가축병리학 및 가축병리해부학	1. 폐수부검의 목적을 설명하라 2. 기생충병(위장병)으로 폐사한 가축의 부검소견(外景 및 內景)의 요점을 기술하라 3. 카다르성폐염과 섬유소성폐염을 비교 설명하라 4. 다음의 용어를 설명하라 가. 出血 나. 牛囊蟲 다. 結節 라. 萎縮 마. 壞死 바. 爛斑
가축세균학 및 면역학	1. 후천면역에 대하여 설명하라 2. 기종저균에 대하여 아는 대로 설명하라 3. 다음의 술어를 간단히 설명하라 가. 그람염색 나. 芽胞 다. 네그리씨소체 라. 응집반응 마. 세균집락
가축약물학	1.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라 가. 축적작용 나. 특효약 다. 부형약 라. 丁織 마. 極量 2. 術野 器械 및 축사의 소독에 맞는 적당한 소독약을 선택하고 그 이유는 3. 다음 약품의 성상 용도 및 용법을 기술하라 가. 포스쿠로랄 나. 비타캄파 다. 이류화탄소 라. 목타르 마. 아드레나린
가축내과학 및 전염병학	1. 소의 전염성능막염(우폐역)의 진단법 2. 폐염의 치료법 3. 면양의 소화관내 기생충에 대해 아는 대로 기술하라
가축외과학	1.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라 가. 懸垂跛 나. 肉芽 다. 挫傷 라. 死腔 마. ?發音 2. 안상요법의 원칙적 조항을 기술하라 3. 관절의 염좌와 탈구의 정의를 쓰고 진단상의 감별점을 지적하라
가축산과학	1. 주요가축의 임신기간 2. 분만수당의 개요 3. 다음의 용어를 설명하라 가. 태반 나. 태세

<p>가축경찰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선의 법정가축전염병을 열거하고 이환하기 쉬운 가축명을 쓰라 2. 가축전염병의 예방방멸법의 요지를 쓰라 3. 다음의 용어를 설명하라 가. 절박도살 나. 검안서 다. 공수병 라. 투벨크린 마. 저온살균 바. 發地檢疫
<p>축산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선에서 어떤 종류의 조선우와 타 품종과의 교잡을 금지하는가 또 조선우의 품종 개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기술하라 2. 다음의 연령에 있어서 切齒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가. 말의 5세와 9세 나. 조선우의 4세와 6세 다. 면양의 2세와 4세 3. 다음의 각 항을 설명하라 가. 斷尾 나. 飛節 다. 換羽 라. 別徵 마. 近親繁殖
<p>가축사양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료성분으로서 단백질이 특히 중요시되는 이유를 기술하라 2. 다음 각항을 답하라 가. 소화율 나. 영양소 다. 조사료와 농후사료
<p>장제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차부란의 원인과 그 요법 2. 승용마와 鞍馬의 장제법의 차이점 3. 다음의 술어를 설명하라 가. 繫 나. 燕蹄 다. 蹄機 라. 蟻洞

학술시험은 가축해부학, 가축생리학, 가축병리학(가축병리해부학 포함), 가축세균학 및 면역학, 가축약물학, 가축내과학(가축전염병학 포함), 가축외과학, 가축산과학, 수의경찰학(가축위생학 포함), 축산학(축산제조학 포함), 가축사양학, 장제학(제병학 포함)

실기시험은 내과임상, 외과임상, 외과수술, 장제”의 4과목이라고 고시하였다.

학술시험과목과 실기시험과목은 수의사면허시험규정의 것과 동일하다. 이후 매년 1-2회 정도 수의사면허시험이 실시되고 있었으며 합격자에 대해서는 관보에 게재되지 않기도 하였으나 1945년의 경우는 관보에 게재되어 있다.

제1회 시험 응시자는 76명이었으나 시험을 치른 자는 69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15명이었으며 실기

시험을 응시한 사람은 13명이었다. 합격률은 시험 응시자의 21.7%로 아주 저조하였다. 그해 11월 29일에 최종합격자발표가 있었는데 합격자는 11명에 불과하였다. 실기시험에서도 2명이 탈락한 것이다. 아주 어려운 시험이었다. 조선총독부가 요구한 수의사의 자질을 체크하는 면허시험인데 합격률이 21%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시험을 거치지 않고 면허를 받은 사람들의 질적 수준의 저하가 조선에서도 면허시험을 보는 제도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학술시험 과목별 합격자수를 발표했는데 표5와 같다. 이 성적은 일부 응시자가 시험을 포기하였기에 숫자상으로 다를 수 있다. 가장 어려운 과목은 가축세균학이었으며 가장 쉬웠던 과목은 수의경찰학이었다. 수의경찰학이라는 과목은 오늘날 수의

법규와 같은 법령과목이다.

이후 매년 수의사면허시험이 치러지는데 1943년의 면허시험부터 시험의 주관 국가기관의 변경되었다. 종전의 경무국에서 농림국으로 이관되어 축산과에서 수의사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이다.

시험 장소도 1회 때는 전농동의 경성농림고등학교였는데 3회 때 부터 두 곳에서 치러졌는데 수원농림고등학교가 시험장소로 추가되었다.

1945년 전쟁에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기 2개월 전인 6월에도 조선에서는 수의사시험을 실시하여 15명의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다.

표6의 수의사면허시험문제는 제1회 때의 것이다.

4. 수의업(獸醫業) 면허제도

식민지인 조선에서 정식으로 수의사면허시험 제도와 병행하여 수의업 면허제도라는 것이 있었다. 이는 수의사의 면허가 아니고 수의업을 개업할 수 있는 면허증이다. '조선수의사규칙 제 28조에 당분간 수의사법 제1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기량을 심사하여 업무의 지역 및 기한을 정하여 수의업의 면허를 준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면허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에 한하여 면허를 주었다.

이 시험은 조선총독부에서 실시한 것이 아니고 각도장관 명으로 실시되었으며 면허증은 조선총독 명의로 부여되었다. 실제로 1938년 4월 18일자 관보에 의하면 수의사면허증 교부자가 5명이 있는

가하면 수의업 면허자가 제1호에서부터 제6호까지가 발표되어 있다. 이후 자주 수의업면허라는 제목으로 발표되고 있기도 하다.

그들은 면허번호와 본적 성명 지역과 기한이 명시되어 있다. 이들은 정식수의사가 아니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그곳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것이다.

최초의 수의업 면허(제1호)는 1938년 4월 14일부로 평안남도 출신의 金泰玉씨이며 지역은 충청북도 일원이며, 기한은 1938년 4월 15일부터 1943년(소화 18년) 4월 14일까지로 한시적인 면허이다. 동일자로 6명의 수의업 면허자가 발표되었는데 모두가 충청북도일원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으며 시험은 5년이였다. 이는 충청북도가 자체적으로

표 8. 수의업 면허 자격시험 문제

보통병	1. 소의 급성 고창종의 증상 및 요법 2. 소의 유행성감모의 증상과유증감별 및 요법 3. 娵隨停滯에 있어서의 처치
전염병	1. 조선에서의 가축전염병예방령에 규정한 가축의 종류와 전염병의 명칭과 그에 감수성이 있는 동물의 명칭 2. 기증저의 증상과 수의경찰상의 처리를 기술하라 3. 비저의 증상 및 주된 해부적 변화
약물	1. 소에 대한 주요한 건위제, 완하제, 해열제의 처방 각 1예 2. 수지, 술구, 기계, 시체 및 축사의 소독에 적당한 약품과 용법 3. 다음의 합제의 처방 및 그 용도를 기술하라 가. 4.3.1합제 나. 부로씨액 다. 루골씨액

시험을 실시하여 총독부로 하여금 면허를 주게 한 것이다.

이후 조선총독부는 1942년 12월 15일까지 총 81명에 대하여 수의업면허를 주었는데 면허번호 61번은 관보에 게재되지 않았는데 행정적인 착오였던 것 같다. 면허기간에 있어서 1942년 5월까지의 5년간의 한시적 면허였으나 1942년 6월 이후의 면허는 그 기한이 3년으로 단축되었다. 원래 조선수 의사규칙에 의하면 수의업면허는 한시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규 수의사배출등과 관련하여 총독부에서 재량권을 발휘하여 기한을 단축한 듯하다.

특이한 것은 각 도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수의업 면허자가 많은 도는 충청남도로서 30명인데 비해 경상남도에는 겨우 2명, 경기도는 1명이며, 함경북도와 평안남북도 및 전라남북도에는 단 한명의 수의업면허자도 없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각도에서 시험을 주관하였기에 정책적인 차이가 있었거나 시험합격자가 없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면허번호 82번은 1942년 12월 15일자로 수여하였는데 이것이 수의업면허로서는 마지막이었으며 이후에는 단 한명의 면허자도 없었다. 이는 정규수의사가 배출됨으로서 더 이상의 한시적인 수의업면허를 인정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의업면허를 주기 위한 자격시험은 각도별로 시험을 치렀기에 각도별로 시험문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시험은 보통병, 전염병, 그리고 약물의

표 7. 각도별 수의업 면허자수

함경남도	3명	충청북도	23명
황해도	8명	충청남도	30명
강원도	6명	경상북도	8명
경기도	1명	경상남도	2

3종을 실시하였다. 참고로 1938년도 실시된 충청북도의 시험문제를 살펴보면 표와 같다.

이 해의 시험은 충청북도만이 실시한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에서도 실시하였으며 함경남도에서는 1차와 2차를 구분하여 실시하기도 하였다. 다음해인 1939년에는 충청북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황해도 강원도 함경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황해도 등에서 간헐적으로 실시하였다.

5. 가축의생규칙(家畜醫生規則)

일본은 한반도에서 수의사의 필요성을 단지 군대에서만 국한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초기에는 수의사의 양성은 군대가 필요로 하는 만큼 이루어졌으며 그 외는 일본국내에서 양성한 수의사들이 한반도에 진출하여 수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당초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수의행정이 원활하지를 못하기에 그들은 한반도에 수의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실업학교에서 수의축산학과를 신설하여 수의학교육을 시키게 되었다.

그들은 대동아전쟁을 계획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물산을 크게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도 있었으며 또한 과거부터 전통적인 수의사들의 가축의 진료업무를 실시하고 있기에 이를 양성화할 필요성도 있었을 것이다. 전통적인 수의사는 수의사규칙에 의거하여 시험을 본다 해도 시험합격은 거의 불가능하기에 일종의 한시적이면서 전통수의사를 인정한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수의사규칙 제35조에 가축의생제도를 신설하면서 조선총독부령 제133호로 '가축의생에 관한 건'이라는 것을 공포하게 된다. 총독부에서는 단지 원칙만을 정해서 각도에 지시하였다.

조선총독부령 제 133호 가축의생(家畜醫生)에 관한 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937년 9월 1일 조선총독 南次郎

제1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선수의사규칙 시행과 함께 현재 가축의 질병에 관하여 진찰 또는 치료를 업무로 하는 자로서 상당한 기량을 가진 자에 대하여 지역을 정하고 7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의 업무의 계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2조 전조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가축의생이라 한다.

제3조 제2조의 규정의 가축의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부칙 본령시행은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제일 먼저 규칙이 정해 반포한 도는 경상남도이다. 경상남도가 반포한 가축의생규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 가축의생에 관한 자격이 규정되었는데 20

세 이상인 자로서 조선수의사규칙시행당시 조선에서 가축의 질병에 관한 진찰 및 치료 업무를 하고 있는 자이다.

제2조는 가축의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역과 기간이 명시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심의하여 기간과 업무지역을 정하여 가축의생승인을 한다.

제3조 가축의생승인을 받기위해서는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승인증이 훼손 또는 망실 시에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가축의생 승인자가 업무의 장소를 이전하거나 휴업할 때는 20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 개업 할 때도 같다.

제6조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가축의생은 진료부를 비치하고 치료한 가축의 종류 성 연령 병명 및 료법, 소유자 및 관리자의 주소 성명 치료 일자리를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가축의생은 전염병의 이환이나 의심되는 것이 발견시는 바로 관할 경찰관서나 가축방역위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가축의생이 사용하는 극약이나 독약은 별도로 정한 것에 한한다.

제10조 가축의생이 금고이상의 형에 처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의 행위가 있거나 신체나 정신이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도지사는 승인을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할

표 9. 각 도별 가축의생규칙 제정사항

도 별	도령번호	제정 일자	조문수 및 관보 게재사항
황해도	18호	37. 10.28	16조(37. 12. 2 관보)
전라북도	18호	11. 5	16조(37. 12. 4 관보)
충청북도	26호	12. 10	16조(38. 1. 31 관보)
충청남도	21호	12. 7	17조(38. 2. 1 관보)
전라남도	25호	12. 6	16조(38. 2. 1 관보)
강원도	30호	12. 4	16조(38. 2. 2 관보)
경기도	27호	12. 13	16조(38. 2. 3 관보)
함경남도	41호	12. 21	16조(38. 2. 7 관보)
경상북도	49호	12. 24	16조(38. 2. 22 관보)
평안북도	35호	12. 28	16조(38. 2. 22 관보)

수 있다. 전항의 취소원인이 소멸하였을 때는 재승인을 할 수 있다.

제11조 전조의 승인취소나 업무정지를 받았을 때는 5일 이내에 승인증을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업무정지 시에는 승인증의 후면에 정지의 요지를 기재하고 기간 만료 시 돌려준다.

제12조 폐업하고자 할 때는 2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승인증을 반납한다. 사망이나 실종의 신고를 받았을 때는 호주나 가족이 전항의 신고를 한다.

제13조 승인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는 그 이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본령에 의한 제출서류는 경찰서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15조 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50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승인을 받지 않거나 업무 정지 기간에 업무

를 했을 때

2. 6조와 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16조 4조 5조 7조 11조 12조 또는 13조를 위반하였을 때는 과료에 처한다.

부칙 본령의 시행 시기는 조선총독부에서 정한다.

다른 도에서도 비슷한 규칙을 제정공포하게 된다. 이 규칙은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에 그 이전에 다른 도에서도 제정하였다.

가축의생이 사용할 수 있는 독약이나 극약은 겨우 안티피린 안티헤프린, 옥도정기, 석탄산, 초산연의 다섯 가지이다.

각도에서는 규칙을 제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여 시행하였으나 함경북도의 것은 관보에 게재되지 않았는데 이는 행정적인 착오였을 것이다. 그 이유는 가축의생이 사용할 수 있는 독약과 극약에 대해서는 관보에 게재되어 있는데 다른 도에 비해서 한 가지를 더 인정하였다. 옥도포름이라는 것이 추가되어 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가축의생제도가 생기므로 총독부사무분장규정을 개정해서 정식으로 가축의생제도를 명문화 한다. 경무국 위생과의 10호에 ‘수의사 및 가축의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6. 장제사규칙(裝蹄士規則)과 장제사 양성

장제사에 대해서도 일본은 1885년(명치 23년)에 4월 5일 법률 제31호로서 제철공(蹄鐵工)면허규칙이라는 것이 제정되고 그해 7월에 제철공면허시험 규칙이라는 것이 발표된다.

이들을 양성하는 학교에서의 제철공에 대한 학칙도 이미 제정되었는데, 1885년 농상무성령 제18호로서 수의학과 제철공학과와의 학칙에 대해서 규정하였는데 그중 교과과목은 표10과 같으며 수업연한은 만 1년 이상이라고 규정하였다.

표 10. 제철학과의 교과과목

선철 조제철 및 조제철 실습 생리 및 병리론 가축위생론	단철 제의 해부 제철학 및 그 실습
---	---------------------------

그러나 식민지 조선에서는 따로 장제사에 관해 국가적인 면허규정이나 자격규정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단지 일본의 장제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장제사 양성학과를 설치한 학교의 규정만 있었기에 별도의 면허시험과 같은 것은 없었다.

한 예로 서울에서의 장제학과가 설치된 학교는 경성공립농업학교였는데 이 학교에서는 1941년 9월 29일에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 27호로 “경성공립농업학교 부치 장제사 양성소규정”을 제정하

여 경기도 지사 鈴木壽男 명의로 통보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경성공업농업학교 부설 장제사양성소는 장제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남자에게 필요한 지식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특히 국민도덕의 함양과 충성심을 가진 황국신민(皇國臣民)의 양성에 노력한다.

제2조 본소 생도의 정원은 20명으로 한다.

제3조 본소의 수업연한은 1년이다.

제4조 본소의 학과목, 학과과정 매주 교과수업 시간은 다음과 같다.(교과목은 생략)

제5조 본소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발한다.

1. 육군특별지원병에 의하여 병역을 종료한 자.
2. 초등학교 초등과를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19세 이상 25세 미만인 자.

제6조 학교장은 학업성적이 불량해 보이거나 품성이 불량한 본소 생도에 대해서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학교장은 전 학과의 과정을 수료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8조 생도는 자기의 편의에 의하여 퇴소코자 할 때 퇴소할 수 있으나 단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생도에게는 학비를 지급한다.

제10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소 중 지

급하였던 학비를 반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소를 명 받은 자
2. 제8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퇴소를 명 받은 자

2항일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 수료증서를 받은 자는 계속하여 1년간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장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2조 전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 제11조의 복무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는 재학생 지급받은 학비를 상환한다. 단 제3호의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았을 때
3. 제12조에 의하여 복무의무를 면제받았을 때

제14조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거나 필요한 세칙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이상과 같은 규정은 장제사 양성과정을 가진 공립학교 마다 가지고 있던 규정으로서 일본은 한반도의 병참기지로서의 확실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조치였다. 즉 말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장제사의 양성을 위해서 학비를 지급하면서 양성한 것은 국가적인 차원의 사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졸업 후에는 국가가 지정한 곳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했으며, 또

한 충성심이 강한 황국신민의 양성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해방이 된 후 미 군정청에서나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장제사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으며 수의사법이 제정될 때도 장제사라는 용어는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으며, 정식으로 법에서 장제사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아주 오랜 후에 한국마사회법의 대폭적인 개정 시에 비로소 등장한다. 즉 마사회법 제 14조(조교사 기수의 면허 등) 제 2호에 경주마의 장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법적으로 장제사라는 것이 인정되었고, 한국마사회에서는 장제사 등록규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정식으로 장제사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수

참고문헌

- 1 일본제국가축전염병예방사 명치편 p.52 수의면허규칙의 제정, p.54 수의 개업 시험규칙의 제정
- 2 조선수의축산학회보 1941년 11월호 제1회 조선수의사면허시험문제
- 3 조선수의축산학회보 1941년 9권 10호 충청북도 수의업 면허시험문제
- 4 조선수의축산학회보 1941년 10월, 제9권 제10호 수의업 면허시험이 충청북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황해도, 강원도, 함경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황해도 등에서 간헐적으로 실시하였다.
- 5 조선총독부 관보 소화 12년 9월 1일 조선수의사규칙과 가족의생규칙 제정 공포
- 6 조선총독부 관보 소화 11월 26일, 경상남도 고시 154호 가족의생이 사용할 수 있는 독약이나 극약의 종류
- 7 조선총독부 관보 소화 12년 11월 27일자 조선총독부령 제 187호 가족의생규칙
- 8 조선총독부 관보 13년 1월 22일 조선총독부 사무분장규정 개정